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2공구)]

□ 점검일시 : 2018.12.06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박수엽, 박상종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19단지 앞 작업장 굴착면 상단에 위치한 산소 절단기 전용대차는 굴착 단부에 근접하게 위치해 있어 외부 충격 또는 호스 당김에 의해 낙하할 우려가 있으니 이동 조치하기 바람.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5(굴착단부 및 흙막이가시설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대피계단 구조물 거푸집 설치구간은 항공마대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는 경사구간을 가설통로 없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 전도의 위험이 있고 작업구간은 박스구조물 상부로 주변 가시설과 구조물이 이격되어 있어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통로보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후 작업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3조(개구부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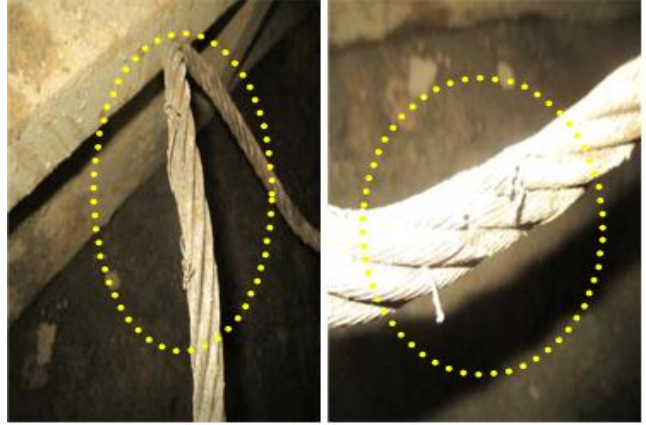
- 19단지 앞 지하굴착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굴착소단은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소단폭 확보 및 작업자가 작업 시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 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지하굴착 구간 작업용 운반구에 사용중인 와이어로프는 일부소선이 절단되어 있으니 확인 후 보완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0(와이어로프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19단지 앞 작업장에서 운행중인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는 전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 인출하여 설치하고 작업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3((2)크레인 등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19단지 앞 복공판 브레이싱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은 주형보 상단과 하부 지반까지 높이가 높지는 않으나, 근로자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없어 브레이싱 용접작업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12(1.추락 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작업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물저장소는 저장 위험물 종류에 맞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고, 일부 위험물저장소는 위험물과 자재가 혼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니 위험물저장소 기준에 맞게 보완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

